2014.12.31.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
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가 폐지되어,

모든 병 · 의원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병 · 의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,

쉽게 할 수 있습니다.

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 병 · 의원 도움 자료

도로교통공단
운전면허본부

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

Contents

신체검사 일반

1. 신체검사란?
2. 운전면허관련 용어
3. 신체검사 기준

신체검사 유의사항

4.검사 전 확인사항
5.불합격자 재확인
6.검사비용의 산정

신체검사서 작성방법

7.검사서식 다운로드
8.민원인 서식 종류
9.검사서 기재시 유의사항

신체검사는 **자동차 운전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**입니다.

민원인이 **운전면허**를 **취득할 때**와 **적성검사**를 **받을 때**

병 · 의원에서 수행하는 **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**를

의미합니다.

운전면허 신체검사는

운전능력 판정의 **기초자료**로 활용되며,

우리나라 **도로교통안전**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.

병 · 의원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**신체장애, 정신질환 등**

특이사항 발견시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.

- **자동차 운전면허** :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운전능력을 갖춘 자에게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 것
- **정기적성검사** : 취득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에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재발급
- **수시적성검사** : 신체 · 정신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운전가능여부를 판정
- **면허 갱신** : 2종 운전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10년째 되는 해에 재발급
- **신규 발급** :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
- **면허 종별 운전 가능한 자동차 범위**
  - **1종 대형특수** : 1종 보통 가능차종 외 승차인원15인승 초과 승합차,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, 긴급자동차 등
  - **1종 보통** : 2종 보통 가능차종 외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,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
  - **2종 보통** : 승용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,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

■ 면허 종별 신체검사 항목

◆ 시력은 모든 면허에 검사 필요(단,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갱신은 제외)

항 목	1종 대형 · 특수		1종 보통		2종 면허		비고
	신규	적성	신규	적성	신규	갱신	
시 력	◎	◎	◎	◎	◎	-	
색채식별	◎	-	-	-	-	-	
청 력	◎	◎	-	-	-	-	
운동능력	◎	◎	-	-	-	-	문진포함

출처 :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 등 재구성

◆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, 정신질환 등 장애사유에 따라 항목 변경

■ 면허 종별 적합 기준

1종 대형·특수	시 력	양안 0.8이상, 각안 0.5이상 (교정시력)
	색채식별	적색 · 녹색 · 황색의 식별 가능
	청 력	55dB 이상, 단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
	운동능력	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(문진포함)
1종 보통	시 력	양안 0.8이상, 각안 0.5이상 (교정시력)
2종 보통	시 력	양안 0.5이상,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.6이상 (교정시력)

■ 병 · 의원 신체검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
◆ 도로교통법은 **아래 3종의 검진결과**를 **신체검사서**로 **갈음**하니 신체검사 前 반드시 **검진여부**을 **확인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체 검사서 갈 음

- ◆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)
- ◆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(의료법 제17조)
- ◆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(병역법 제11조)

※상기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민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

◆ **검사결과**가 **기준**을 **충족**하는 민원인은 **신체검사서**가 **필요 없으니**,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로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※단 1종 대형특수는 추가검사 필요(청력, 운동능력 등)

◆ **건보공단**과 **병무청 검진통보서**는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**행정망**으로 **조회 가능**합니다.(**진단서**는 조회 안되므로 **개별 지참**해야 합니다.)

■ 수시적성검사대상자 검사 전 확인사항

-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**가까운 시험장**에 **반드시 문의** 요망
  - ☞ 가까운 시험장 안내 ☎1577-1120

■ 신체검사 부적합 민원인 검사방법

- **시력 측정은** 컴퓨터측정기로 정밀측정, 안경 조정,
  명암관계 같이 일시적 시력장애 현상 제거 후 **재검 가능** 합니다.
- **각 안**이 **양안기준**을 **초과**할 경우 신체검사 **적합**으로 간주합니다.
- **색채 식별**은 기준 미달시 식별연습 후 **2회 검사 가능** 합니다.
- 청력은 청력검사기를 활용하여 검사하고, 보청기 착용이 어려울 경우,
  전문의의 정밀검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.
  보조장치 부착자는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기재바랍니다.

■ 검사비용의 산정

- 검사비용은 **보건복지부**에서 **고시**하는 **의료수가**에 따라 병의원에서 **자율**적으로 **산정**

※ 참고사항)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검사비용

- 1종 대형/특수 면허 : 6,000원
- 1종 보통 및 2종 보통 : 5,000원

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신체검사 서식 받기

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

중간 우측 **신체검사 양식**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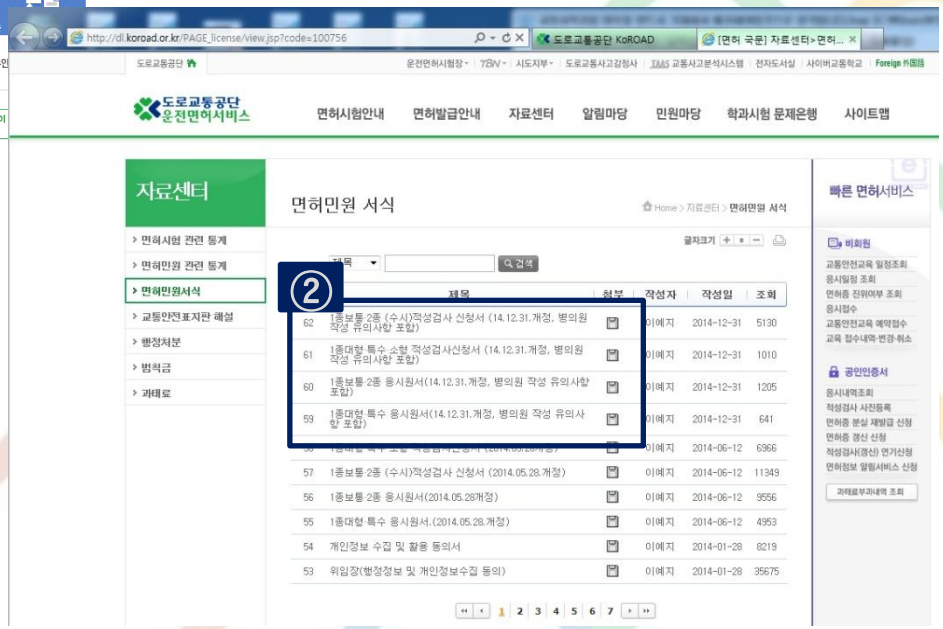

① **59~62번 게시물**

신청서와 병의원 작성 유의사항 받기

■ 민원인 신청 서식 4종

◆ 서식은 총 4종으로 **운전면허 응시원서 2종**과 **적성검사 신청서 2종**이 있습니다.

응시원서 2종

1종 대형 · 특수 응시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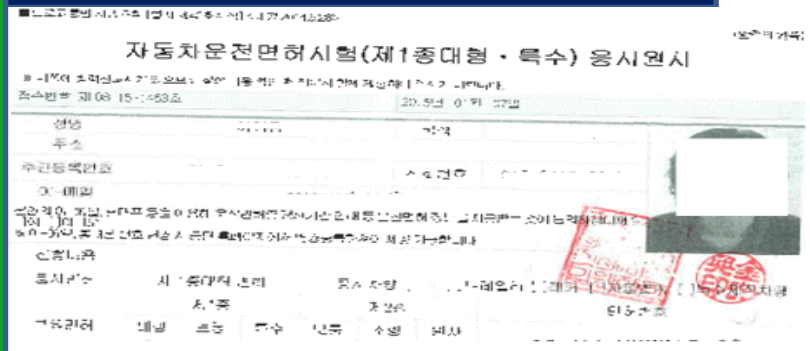

1 · 2종 보통 응시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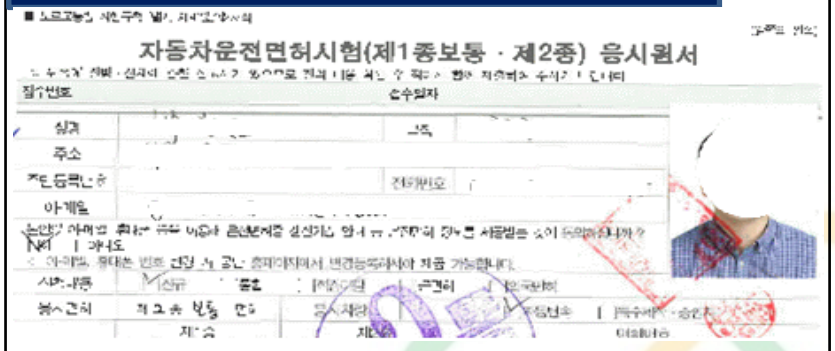

적성검사 2종

1종 대형 · 특수 적성검사 신청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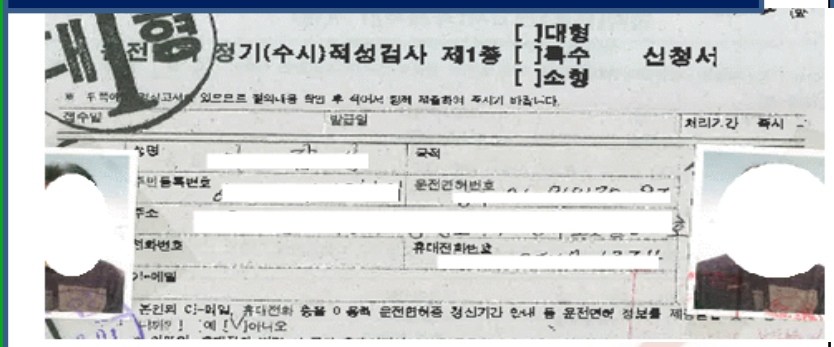

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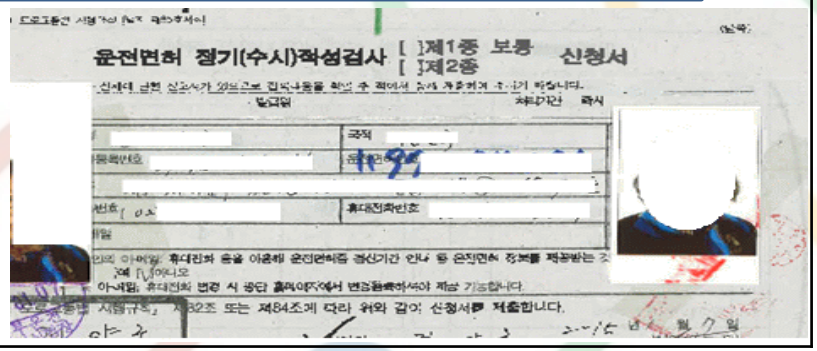

■ 신체검사서 기재시 유의사항

◆ 검사서식 앞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바랍니다.

서 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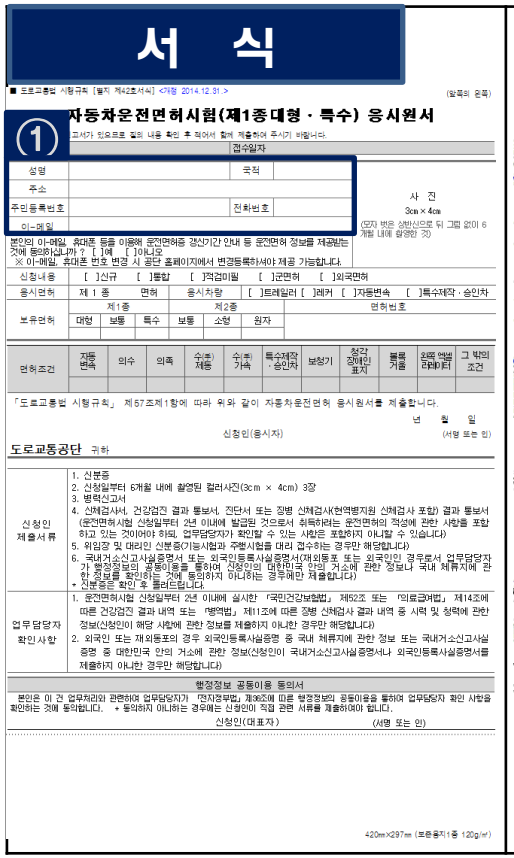

작성 예시(앞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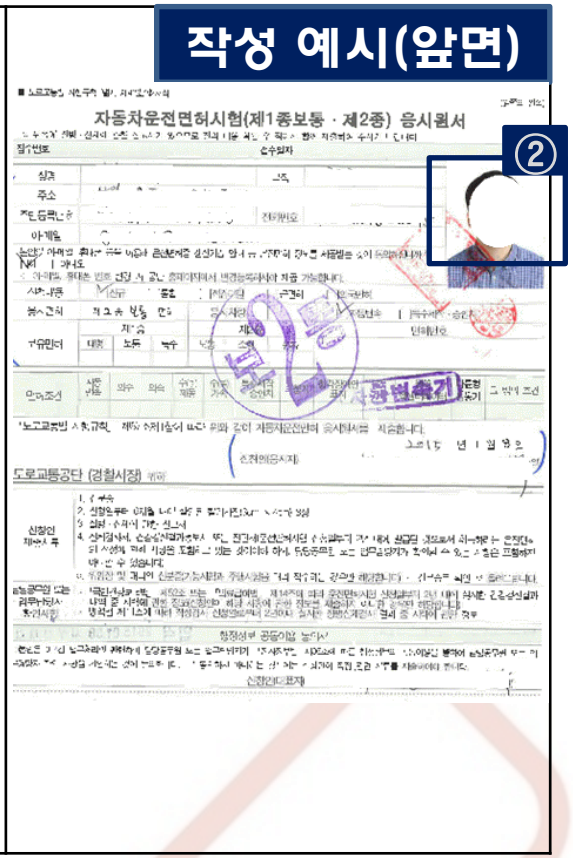

① **신청서**는 **신분증**의 사진, 주민번호 등 **기재사항**과 일치 여부 **확인** 합니다.

② **병원장**의 **직인**과 **담당의사 실인**은 **사진**과 **겹쳐 날인**, **투명테이프 부착** 합니다. (올바른 사진 예시-붙임)

★ **사진 임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날인 후 테이핑바랍니다.**

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

증명 사진은 표준 규격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.

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

- 3cm × 4cm 탈모, 상반신, 무배경,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
- 복사,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
-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
-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
- 귀 부분이 노출 되어야 하며 흰색 바탕의 칼라 사진

■ 신체검사서 기재시 유의사항

◆검사서식 뒷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바랍니다.

서 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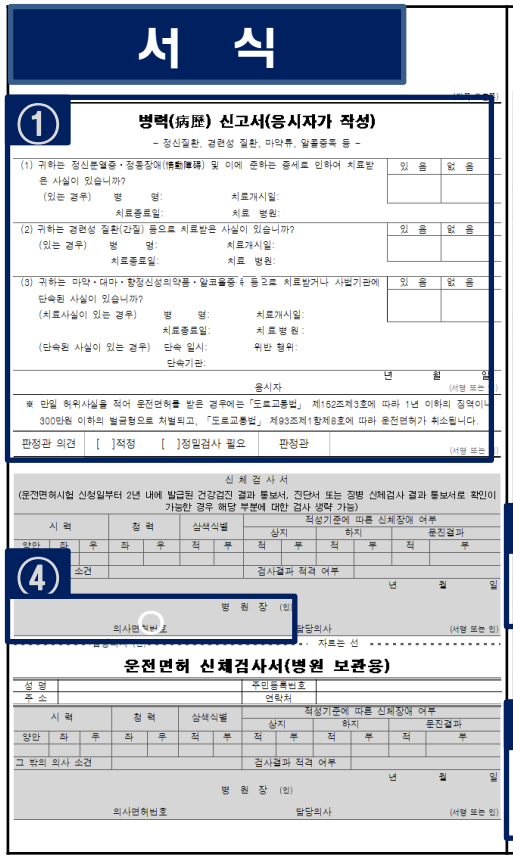

작성 예시(뒷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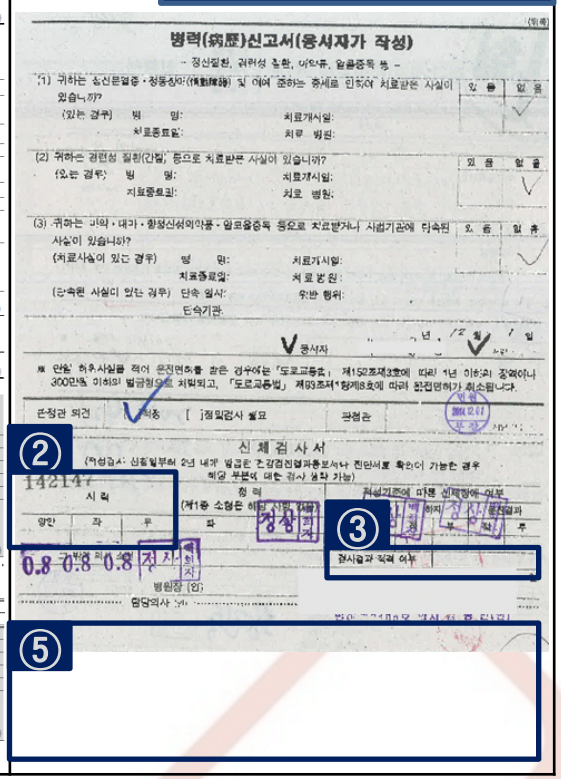

① 의료기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② 시력은 양안과 좌 · 우 각 안을 측정 합니다.

③ 검사결과 적격여부는 기입하지 않습니다. (시험장 판정관 작성)

④ 의사 면허번호는 정확히 기재합니다.

⑤ 병원보관용은 절취하여 병원에서 보관바랍니다.

★ 신체검사서 기재내용 위 · 변조를 막기 위해, 시력, 청력 등 기재난에 투명테이프 부착바랍니다.

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

연 락 처

운영일반	콜 센 터	☎ 1577-1120
제도개선	면허민원처	☎ 02)2230-5260

감사합니다

도로교통공단
운전면허본부